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(박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0704 발의연월일: 2025. 6. 11.

발 의 자:박 정·서영석·장철민

김태선 · 허 영 · 이재강

차규근 • 김정호 • 윤준병

위성곤 • 한민수 • 김영환

박홍배 · 김영진 · 송옥주

황정아 • 권향엽 • 안도걸

소병훈 • 이용선 • 허성무

의원(2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위원회가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심사를 11월 30일까지 마치도록 하고, 해당 기한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다음 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함.

그러나 동 제도를 도입한 이래 대부분의 경우 심사기한 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안등을 의결하지 못하여 사실상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심사권이 약화되고, 정부는 12월 1일 본회의 자동부의를 염두에 두고 국회 심의과정에 소극적으로 대응한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.

이에 예산안등 및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

를 폐지하려는 것임(안 제85조의3 및 제106조의2제10항).

법률 제 호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5조의3의 제목 중 "본회의 자동 부의 등"을 "심사기한"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"한도액안(이하 "예산안등"이라 한다)과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의"를 "한도액안(이하 "예산안등"이라 한다)의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. 제106조의2제10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본회의 제85조의3(예산안 등의 심사기한) 자동 부의 등) ① 위원회는 예 산안, 기금운용계획안,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(이하 "예산 액안(이하 "예산안등"이라 한 안등"이라 한다)과 제4항에 따 다)의-----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 률안의 심사를 매년 11월 30일 까지 마쳐야 한다. ② 위원회가 예산안등과 제4항 <삭 제> 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 수 법률안(체계·자구 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 된 법률안을 포함한다)에 대하 여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심 사를 마치지 아니하였을 때에 는 그 다음 날에 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고 바로 본회의에 부의된 것으로 본다. 다만, 의 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합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. ③ 의장은 제2항 본문에 따른 〈삭 제〉 법률안 중에 같은 제명의 법률

안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제2 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소관 위 원회 위원장의 의견을 들어 일 부 법률안만을 본회의에 부의 할 수 있다.

④ 의원이나 정부가 세입예산 안에 부수하는 법률안을 발의 하거나 제출하는 경우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 여부를 표시 하여야 하고, 의장은 국회예산 정책처의 의견을 들어 세입예 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한 다.

⑤ 위원회가 제4항에 따라 지 정된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 에 대하여 대안을 입안한 경우 에는 그 대안을 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.

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제106조의2(무제한토론의 실시 등) ① ~ ⑨ (생 략) 에 따라 지정된 세입예산안 부 수 법률안에 대해서는 제1항부

터 제9항까지를 매년 12월 1일 까지 적용하고, 같은 항에 따라 <삭 제>

<삭 제>

등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

실시 중인 무제한토론, 계속 중인 본회의, 제출된 무제한토론의 종결동의에 대한 심의절차 등은 12월 1일 밤 12시에 종료한다.